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127

발의연월일: 2025. 3. 19.

발 의 자 : 윤준병ㆍ허 영ㆍ박용갑

장철민 · 김태선 · 송옥주

정동영 · 서영교 · 주철현

박민규 · 강준현 · 이원택

허종식 • 박희승 • 박홍배

민병덕 • 김우영 • 신영대

의원(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수도권·대도시 중심의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이촌향도 등 인구유출 현상이 심화되었고, 최근에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의 고착화 등으로 인한 자연 감소도 갈수록 증가하면서현재 농어촌 지역은 인구소멸·지방소멸의 위기에 봉착해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농어촌 지역에는 장기간 방치되는 빈집 문제가 대두되었고, 지난 2020년 빈집 정비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의 여건에 맞춰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의 제도적 지원도 한계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임.

농어촌 빈집은 주변 지역의 위생·안전 등의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농촌주민의 삶의 질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의 위해요소로 인식되고 있지만, 농어촌 지역 빈집 철거를 위한 유인기제의 부족, 농촌 빈집 정비와 관련된 부처 및 법령의 다원화 등의 문제들로 인하여 종합적·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의 중장기 계획에 기초한 종합적·체계적인 농촌 빈집 정비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제정법을 마련하고, 농어촌 빈집 정비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기금을 설치·운용함에 있어 농어촌 빈집 집정비기금으로의 전출금을 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6항제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912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6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농어촌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농어촌 빈집정비기금으로의 전출금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의2(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제18조의2(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① ~ ⑤ (생 략)	설치 등) ① ~ ⑤ (현행과 같
	음)
⑥ 상생기금은 다음 각 호의	6
용도에 사용하되, 재단은 상생	
기금이 지역 간 형평을 고려하	
여 사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	
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u> <신 설></u>	7. 「농어촌 빈집 정비 및 활용
	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농어촌 빈집정비기금으
	로의 전출금
<u>7.</u> (생 략)	<u>8.</u> (현행 제7호와 같음)